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제4차)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11. 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 11. 9.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거열산성 군립공원 및 죽전근린공원 구역내 사유지를 사전에 매입, 향후 공원조성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m²/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및지목	면적	예정금액	비고
취득	토지	합 계	4필지	8,875	168,968	
		소 계		6,991	55,928	
		거창읍 상림리 732	답	2,198	17,584	거열산성 군립공원
		거창읍 상림리 733	“	4,793	38,344	
		소 계		1,884	113,040	
		거창읍 상림리 382-14	전	694	41,640	죽전근린 공 원
		거창읍 상림리 382-15	“	1,190	71,400	

4. 참고사항

-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

○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대상 목록

(단위 : m²/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4 필지	8,875	168,968				
1	토지 (답)	거창읍 상림리 732	2,198	17,584	2006	공원구역 사유지	거창군	
2	토지 (답)	거창읍 상림리 733	4,793	38,344	2006	“	“	
3	토지 (전)	거창읍 상림리 382-14	694	41,640	2006	“	“	
4	토지 (전)	거창읍 상림리 382-15	1,190	71,400	2006	“	“	

5. 검토의견

◆ 거열산성 군립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

- 83년부터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거열산성은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공원구역내 약수터 주변정비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 55,928천원의 예산으로 소유자와 협의된 2필지 6,991m²를 공원조성계획 수립 이전에 우선 매입하여

산책로 데크, 화초식재, 간이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사유지 매입 소요예산 55,928천원은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비('05 명시이월 : 700,000천원) 집행잔액으로 매입하려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 공원구역내 개인사유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주민 편의시설 설치시 등 산객 편의도모 및 대다수 군민들의 민원해소와 향후 거열산성 공원 조성계획에도 기여하리라 판단됨.

◆ 죽전 근린 공원구역내 사유지 매입

- 76년부터 근린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어 92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죽전근린공원은 그간 열악한 군 재정과 현실성에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여, 공청회 등 재정비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등을 거쳐 2007년 1월부터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수립코자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 2007년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공원구역내 협의 가능한 사유지를 부분적으로 우선 매입한다는 취지하에, 금회 소공원 조성을 위한 찌투리땅 매입 추진시 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있는 토지 2필지 1,884m²를 113,040천원의 예산으로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수립 이전에 매입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거열산성 사유지 매입과 함께 소요예산 113,040천원은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비('05명시이월 : 700,000천원) 집행잔액으로 매입하려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참고로, 현 공원부지는 89필지 57,000m²로서 '94년도 군청 이전계획에 따라 40필지 30,685m²를 기 매입하였고,
현재 49필지 26,315m²가 남아있는 상태임.
- 공원조성 변경계획이 수립되어 예산이 확보되면 잔여부지의 매입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금번 사유지 매입(2필지)을 계기로, 향후 공원구역내 타 필지에 대한 매입요청 등 민원 발생시 전부 수용하여 매입하는 등 조치계획이 있는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0.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4.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물 또는 공작물의 대체설치

③제1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1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